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4 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정춘생·차규근·신장식

조 국 · 이해민 · 김재원

서왕진 • 박은정 • 김선민

강경숙 • 황운하 • 김준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 임.

그러나 현 법률에는 국가·지자체가 치유센터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비용을 출연·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,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 중임. 이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, 지역별 특화 운영·연구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.

본 기관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되어 취지에 맞게 설립·운영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.

또한 각 사건에 따른 피해 범위도 다르기에 하나의 치유센터가 아

닌,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필요함.

이에 치유센터의 설립·운영 과정에서 치유센터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,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, 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맞는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(안 제3조, 제5조 및 제18조)

법률 제 호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"를 "국가"로 한다.

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치유센터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다.
- ⑤ 지역별 치유센터의 설립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 중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"를 "국가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|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|
| 무)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</u> 는 치 | 무) <u>국가</u> |
| 유대상자 및 공동체의 트라우 | |
| 마를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건 | |
| 전한 치유환경이 조성될 수 있 | |
| 도록 연구・조사・지도・상담 | |
| ·치료·재활·지원·예방 등 | |
|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| |
| 제5조(설립) ① ~ ③ (생 략) | 제5조(설립) ① ~ ③ (현행과 같 |
| | 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④ 치유센터는 지역별 특수성 |
| | 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할 |
| | <u>수 있다.</u> |
| <u><신 설></u> | ⑤ 지역별 치유센터의 설립 요 |
| | 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|
| | <u>으로 정한다.</u> |
| 제18조(출연 또는 보조) <u>국가와</u> | 제18조(출연 또는 보조) <u>국가</u> |
| <u>지방자치단체</u> 는 치유센터의 설 | |
| 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| |
|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 | , |
| 조할 수 있다. | |